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70
----------	-------

발의연월일 : 2017. 12. 1.

발의자 : 권미혁 · 남인순 · 김영호
신창현 · 윤관석 · 추미애
이재정 · 심기준 · 박경미
송옥주 · 금태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는 1개소의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통하여, 시·도에서는 18개소의 지역지원기관을 통하여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만이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이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이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 -시·도지사는----- ----- -----.
⑪ (생 략)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	⑪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p>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u>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p>	<p>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p>
<p>① (생 략)</p> <p>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도사”라 한다)</u>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도지사는</u></p>
<p>③ · ④ (생 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